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문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2년 1월 4일(화) ~ 1월 15일(토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				
제출방법	견본주택 방문접수				
수신처	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00-19 (대표번호 1800-3430)				
유의사항	•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•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•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				

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	유형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	0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0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0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		피부양 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0		인감증명서	본인	• 용도에「아파트 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(반드시 본인발급용으로 발급진행)
	0		인감도장	본인	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(본인 직접 계약에 한함)
	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			피부양 직계존속	•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 •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		출입국 사실 증명원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0	0		피부양 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		피부양 직계비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0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	
			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	0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0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[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여 발급]
		0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확인 시(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0	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	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0	무허가건물확인서		
		0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
		0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[※]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표 등· 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 금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생각을 받으며 당점자에 한하여 계한 대로 모든 조보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 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[※]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